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 의료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시
연금 지급정지 예외 근거 신설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8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의료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시 연금 지급정지 예외 근거 신설	2
2. 개정안 부칙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4. 16.
3. 회 부 일 : 2026.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퇴직 의료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시 연금 지급정지 예외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급받던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¹⁾)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이라 한다)이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이하 같음)을 수급 중인 의료인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²⁾ 퇴직 의료인력이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음.
-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³⁾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숙련된 의료인력이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재진출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개정안 조문대비표 제42조 조제목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중복 표기되어 있어 수정 필요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 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 5. (생략)

3)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 진료소
3,607	262	1,326	125	1,894

※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보건의료시설이나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를 관리함.
※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2025년 말 기준 현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 진료소
합계	36,274	28,516	4,984	882	1,892
의사	1,225	608	617	0	0
치과 의사	549	331	217	1	0
한 의사	925	243	682	0	0
약사	132	131	1	0	0
간호사	15,555	11,678	1,625	410	1,842
영양사	1,370	1,176	99	95	2
보건교육사	85	77	7	1	0
방사선사	981	886	87	8	0
임상병리사	1,424	1,301	103	20	0
치과위생사	1,608	1,322	246	40	0
물리치료사	1,413	1,055	294	64	0
작업치료사	594	538	34	22	0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217	204	10	3	0
간호조무사	1,083	651	409	19	4
행정직	1,274	1,201	59	14	0
보건직	1,671	1,518	120	33	0
기능직 등	6,168	5,596	374	152	46

※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2025년 말 기준 현원)

□ 다만, 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학연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에서는 사학연금 제도의 목적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퇴직 후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사학연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 및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⁴⁾. 따라서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2월말에 발표된 「제6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재계산 보고서」⁵⁾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적자 발생 시점 및

4) 구(舊)「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 등 위헌소원(2019헌바161., 2022. 1. 27.)

○ 심판대상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에 근거, 매 5년마다 실시

기금소진시점은 2020년 발표된 제5차 재정재계산 대비 모두 앞당겨져 2028년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2047년에는 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됨.

[사학연금 기금 재정 현황(제5차 vs 제6차 재정재계산 비교)]

구분	기금최고액(연도)	재정적자 발생시점	기금소진 시점
제5차	25.12조원 ('28년)	2029년	2049년
제6차	31.67조원 ('27년)	2028년	2047년

출처 :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제6차 재정재계산 보고서, 사학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 2025.12., p.86.

한편, 개정안에 따른 추가 연금 지출액을 추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2025년 말 기준으로 사학연금 수급 중인 의료인 10,005명 중 약 3%(전체 의료인 대비 지역의료인 비중)에 해당하는 300여 명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액은 연간 약 97억 원으로 추정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의료인 연금수급 현황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추정]

연도	인원 (명)*	연금액 (백만원)	재취업률**	인원 (명)	연금액 (백만원)
2021	7,069	200,399	3%	212	6,012
2022	7,704	224,518		231	6,736
2023	8,453	258,422		254	7,753
2024	9,257	292,294		278	8,769
2025	10,005	323,160		300	9,695

* 최종 퇴직 기관이 대학병원인 연금수급자

** 「지역보건법」에 따른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을 3%로 가정

- 전체의료인(약 108만명) 대비 지역의료인(약 3.6만명) 비중 : 약 3%

·출처 :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제공자료(2025년말 기준)

이와 같이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소요가 예상되는 개정안에 관하여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가입자 전체의 공감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의료인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 퇴직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관 재직 중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인 의료인에게만 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의료인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방교육청 및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출]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신중 검토

- 연금 지급 정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에 대한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 방지 목적으로 도입되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속하고 있는 제도로써, 연금 지급정지 예외는 이러한 입법목적과 연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
- 퇴직 의료인에게만 연금 지급정지 예외 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사학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 정지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만 전액 지급 정지되는 등 전직 공무원 신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시·도 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반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은퇴한 인력을 활용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개정에 반대함
 - 특정 직군에 한정하여 연금 지급 정지 예외라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납입자·수혜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지역 의료 확충은 국가 보건 사무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보건복지부> : 일부 수정

- 최근 인구소멸, 민-관 간 임금격차 등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65세이상 은퇴한 시니어의사의 경우, 지역공공보건기관 등 근무 의지가 있어도, 근무 시 사학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 근무 유인이 적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 유인을 높여 지역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재취업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 해 연금 지급 정지를 미적용하는 것은 소득 상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공적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타 소득활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한하는 등 면밀한 제도적 설계 필요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연금 지급정지 예외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학연금 수급 의료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근무 여부 확인, 연금 지급정지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의 시행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시행일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연금 지급정지 예외에 관한 개정규정을 개정법 시행 이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

은 개정법 시행 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부칙 제2조의 제목은 개정규정의 내용이 지급정지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금 지급정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192
